

2023. 8. 2.(수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8월 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

생활환경과장

최종하

02-2133-2473

환경분쟁조정팀장

곽정순

02-2133-42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edc.seoul.go.kr/>

서울시,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·신속·저비용 장점

- 공사장)층간소음)사업장 순으로 신청 많고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
- 환경분쟁조정위,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, 절차도 간단해 처리기간 단축
- 분쟁조정 해결률은 62%로 꾸준한 증가 추세...3년간 2억 2천만 원 배상 결정
- 환경권 보장 강화·보상노력,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 피해방지대책 마련 노력

-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·진동,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.
 -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, 진동,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.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,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.
 - 분쟁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'재정',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'조정', '알선' 등이 있다.
-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되었으며,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(진동, 먼지 포함)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%

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신청 현황

(단위 : 건)

연 도	신 청 건 수	소 음			기 타 (악취, 빛공해 등)
		공 사 장 소 음 (진동, 먼지 포함)	층 간 소 음	사 업 장 소 음	
2022	104	77	18	6	3
2021	207	176	10	12	9
2020	150	118	15	10	7
소 계	461	371	43	28	19

(# 사례)

▶ 강서구 B아파트 주민들은 C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해당 시공사에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. 하지만 시공사와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주민 47명은 시공사를 상대로 총 7,700만 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. 이 사건을 조사·심의한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82dB(A)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(A)를 초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.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공사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총 4,313만원 (인당 평균 약 92만원)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.

□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%의 해결률을 보였다.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, 2021년 19.8%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.4%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(59%), 2021년 130건(63%), 2022년 69건(66%)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.

○ 위원회는 조정성립을 위해 양측 입장표명을 통한 합의도출과 아울러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,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.

○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2022년	2021년	2020년
신청건수	461	104	207	150
해결건수 (배상결정 및 합의)	288	69	130	89
해결율	62.4%	66.3%	62.8%	59.3%

□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‘재정’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%를 넘게 차지했으며,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.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이다. 배상금 지급 일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,3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.

○ 합의를 유도하는 ‘조정’ 및 ‘알선’ 신청 건수는 총 124건이다. 조정 및 알선과 비교해 재정 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재정 결정문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.

□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~3회 개최된다.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.

○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포함하여 20명의 환경,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.

○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의견 제출, 심사관 현지조사,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.

-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”이라며 “서울시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